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655-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3 개정

지역 통계 표준 매뉴얼

노인등록통계

통계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 개요

추진 목적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획부터 조사, 자료처리, 통계공표 및 자료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제공

통계 선정

·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생산대행 및 기술지원 중 발생한 개선 사항 사전 파악

· 외부 수요 및 내부 협의체를 통해 개발·개정 매뉴얼 선정

협업을 통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통계청

개발·개정 매뉴얼 선정
표준매뉴얼 TF 구성·운영
관련기관 협력관계 조율
표준매뉴얼 배포

지방통계청

생산대행·기술지원 수요 파악
세부실시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TF 참여
조사 실시 또는 통계 작성

지자체

통계수요 및 정책활용 계획 제출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계속작성 예산 확보
매뉴얼 활용 통계 작성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현황

2023

- (개정)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무안
- (개정) 귀농귀촌실태조사 | 고흥
- (개정) 영유아통계 | 울산 울주군
- (개정) 노인등록통계 | 경상북도

2022

- (개정)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부산 연제구
- (개정) 특산물실태조사 | 해남
- (개정) 청년통계 | 원주
- (개정)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수원, 영암

2021

- (개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군포
- (개발) 농업실태조사 | 무주
-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 함양

2020

- (개발) 장애인통계 | 성남
  - (시범) 농업실태조사 | 담양
  - (시범) 어가실태조사 | 제주

2019

- (개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김해 , 동해
- (개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세종, 제주, 남원
- (개발) 청소년사회환경조사 | 완주, 양평
- (개발) 다문화 · 외국인가구통계 | 안산, 경산

2018

- (개발) 노인등록통계 | 대구, 울산
- (개발) 청년통계 | 충남, 광양
- (개발) 영유아통계 | 경기
- (개발) 경제지표조사 | 평택, 진천
- (개발) 귀농귀촌실태조사 | 곡성
- (개발) 노인실태조사 | 영덕, 합천

2017

- (개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천안 세종
- (개발) 복지실태조사 | 여주, 양산
- (개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 아산, 인천 남구
- (개발) 특산물실태조사 | 장흥, 광양
- (개발) 서비스업실태조사 | 춘천

▶ 관광실태조사('17), 창업통계('18), 여성통계('19)는 작성 및 활용 중지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비교

	조사통계	행정통계
기 획	수요조사, 기본계획수립(조사목적, 필요성, 조사대상, 추진일정), 이용가능 통계 유무 등(유사 중복 통계 여부)	행정자료 유무, 행정 용어 정의, 행정자료 주기 및 갱신여부 파악, 항목선정 및 결과표 사전 작성
조사준비	조사표 설계(이용자, 전문가 의견 수렴), 표본설계, 입력프로그램 개발, 시험조사, 실시계획수립, 조사표류 인쇄, 조사지침서 제작,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홍보	기초자료 입수,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본 조 사	현장조사 실시	행정자료 입수, 원자료 DB 구축 및 자료정제
자료처리	자료처리 계획수립, 입력, 내용검토, 무응답 처리	통계 작성용 DB 구축, 분석용 DB구축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비 용	조사표 작성, 표본설계, 조사, 자료처리까지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고비용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저렴
공표 및 제공	집계 분석, 공표, 표본오차 산정, 메타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행정자료의 한계점과 결측값 처리 방법 설명

조사통계(13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년 개발	조사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거주하는 만 25~54세 여성
	조사 항목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경험 여부,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구직활동 여부·기간, 직업교육훈련, 구직경로, 구직 애로사항, 현재 일자리, 취업·창업 의사 등
경제지표조사 2018년 개발	조사 목적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경제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수 1인 이상의 사업체 중 일부 산업을 제외한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의 종류, 가동률, 생산설비의 적절성, 근로복지제도, 인력현황, 경영현황, 업종현황 및 전망 등
귀농귀촌실태조사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조사 목적	귀농·귀촌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대상 기간 내 조사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가구 내 가구주 및 만 19세 이상 가구원
	조사 항목	전입시기·형태, 거처의 종류, 거주 지역 만족도, 사회적 관계, 행정·정책, 가구 소득 형태, 영농형태·규모 등

조사통계

노인실태조사 2018년 개발	조사 목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식 및 생활현황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인 서비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일반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개인
	조사 항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치매, 보건복지, 일자리, 생활비, 노후 생활 등
농업실태조사 2021년 개발	조사 목적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래인력 양성 및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
	조사 항목	농업 종사 기간, 전·겸업, 경지 면적, 소득 및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교육, 귀농 여부, 농업 정책 등
복지실태조사 2017년 개발	조사 목적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조사 항목	주거 형태, 근로상태, 일자리, 소득 및 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여가활동, 사회참여, 사회복지 인프라, 지역사회 만족도 등
서비스업실태조사 2017년 개발	조사 목적	지역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생산, 전국 또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가능한 경제지표를 제공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의 서비스업 조사대상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장 현황 및 특징, 인력, 재무상황, 판매 및 마케팅, 경영전망 등
일자리인식실태조사 2017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시도 및 군민의 취업실태, 취업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표본가구의 만 19~64세 가구원
	조사 항목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 구직방법 및 경로, 일자리현황 및 전망, 구직 애로사항, 희망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정책 등

조사통계

일자리종합실태조사 2019년 개발 2023년 개정	조사 목적	기업현황 및 인력수급 실태, 근로조건 및 환경 등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내 고용현황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대분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 중 일부업종을 제외한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인력수급현황, 체감경기, 매출규모, 인건비, 정책 및 근로환경, 회사 경영실태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2019년 개발 2021년 개정	조사 목적	전통시장·상점가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
	조사 항목	사업체 현황,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 화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의 종류, 임차료, 연간 인건비, 주차환경, 운영 애로사항 등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9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가구원
	조사 항목	주거와 교통, 1인 가구 여부, 결혼관, 적정 자녀 수, 출산·육아 대책, 교육, 건강, 문화와 여가, 삶의 질, 일자리, 경제 등
청소년사회환경조사 2019년 개발	조사 목적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소재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특수학교 및 분교 재학생 제외)
	조사 항목	건강, 정서, 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장래희망, 직업 선택 기준, 진로 활동 경험, 여가, 청소년 시설,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폭력, 성폭력, 경제적 수준 및 동네환경 등
특산물실태조사 2017년 개발 2022년 개정	조사 목적	지역 특산물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특산물 육성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
	조사 대상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에 거주하며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가
	조사 항목	특산물 생산 경력·규모, 전·겸업 여부, 주 종사 분야, 농기계 보유 현황, 영농시설 보유 현황, 조직·판매·유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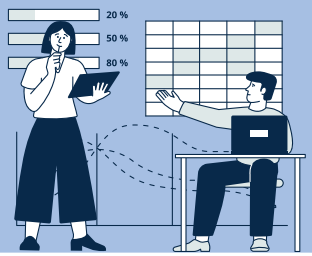

행정통계(5종)

노인등록통계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작성 목적	빠른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주요 통계표	노인 인구·가구, 사망률, 전입·전출, 장래노인인구 추이, 주택 소유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학대 현황 등
다문화·외국인 가구통계 2019년 개발	작성 목적	다문화·외국인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외국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주요 통계표	다문화·외국인 인구·가구 현황, 혼인상태, 출생아 수, 경제 활동, 주택 소유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건강 등
영유아통계 2018년 개발 2023년 개정	작성 목적	영유아기의 인구·보건·사회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영유아 통계를 작성하여 저출산 및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및 해당 가구
	주요 통계표	영유아인구, 영유아자녀 가구, 전입·전출, 출생아 수, 모 평균 출산연령, 모성보호수급자, 영유아가구 주택소유 현황, 건강검진, 아동복지시설 현황, 어린이집 현황 등
장애인통계 2020년 개발	작성 목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작성 대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요 통계표	장애인 인구, 장애인 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특수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고용 등
청년통계 2018년 개발 2022년 개정	작성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작성 대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별 정책 대상으로 정한 청년 연령이 상이하여 가장 포괄적인 범위인 만 15~39세를 작성범위로 권고하나, 지자체 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주요 통계표	청년인구, 혼인상태, 전입·전출, 인구동향, 청년가구, 신혼부부, 주택소유, 일자리, 창업, 기초생활보장, 연금, 건강보험 등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이용안내

전자간행물 다운로드

·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 - 지역통계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 통계청(kostat.go.kr) - 정책정보 - 지역통계 - 지역통계표준화 - 표준매뉴얼

간행물 열람

통계도서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

나라셈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4층

통계교육원도서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문의처 안내

통계청	전화번호	관할 지역
지역통계기획팀	042) 481-6988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ㄴ 강원지방통계지청	033) 258-3650	강원특별자치도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Contents

Part
01. 통계 개요 1
제1절 행정통계 개요 3
제2절 노인등록통계 개요 6

Part
02. 통계작성 기획 13
제1절 기본계획 수립 15
제2절 통계표 설계 19
2-1. 통계표 체계 19
2-2. 통계표 구성 20
2-3. 주요 통계표 22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25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37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37
4-2. 행정자료 입수 38

Part
03. 통계표 작성 41

Part
04. 결과 분석 47

Part
05. 자료공표 및 관리 ····· 53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 55
제2절 개인정보 보호 ····· 56

Part
06. 부록 ····· 59
1. 통계표 설명서 ····· 61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 119
3. 작성계획(안) ····· 137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 150

1 PART

통계 개요

제1절 **행정통계 개요**

제2절 **노인등록통계 개요**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01 통계 개요

제1절 행정통계 개요

행정통계 일반 현황

- 개념: 통계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주된 원천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거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을 통해 생성한 자료 및 이를 집계하여 생산한 자료로 통계를 작성

-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비교

구분	통계조사자료		행정자료
	전수조사*	표본조사**	
포괄범위	모집단 전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목표 모집단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
내용	광범위한 자료	심층·분석 주제에 적합	행정목적에 따라 제한적
개념/정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행정적 필요성에 따름
품질관리	오차 최소화 설계 가능	상대적 저비용	주요항목 외에는 관리소홀
비용	고비용	상대적 저렴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주기	5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월간 또는 연간 (행정프로그램에 따라 좌우)
시의성	조사 종료 1년 후 자료사용 가능	정기조사는 몇 주, 임시조사는 몇 달 내 결과 산출	자료입수 시기에 따라 월간, 분기 자료생산 가능
응답부담	전 국민, 전체 가구 대상	대상자에게는 크나 평균적으로는 적음	추가 부담 없음

* 전수조사란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 구성원 각각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행정통계 개발의 한계점
  - (행정자료 자체의 한계) 행정자료는 당초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 포괄범위 차이, 결측값 존재 등으로 표준화 작업 및 자료 정제 필요
  - (원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 「통계법」에 행정자료 활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행정자료 제공에 미온적임
  - (대용량 행정자료 처리·보완의 어려움) 입수한 대용량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측값 보완, 자료 간 연계·통합 등 통계적 가공처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함
  -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 곤란) 월별, 분기별 등 보다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최신 행정자료의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
- 행정통계 개발의 기대 효과
  - (정책맞춤형 상세 통계 생산) 산업·직업 세부 분류별, 읍·면·동 등 소지역별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고, 세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데이터 생산 가능
  - (비용 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기존의 조사통계 또는 새로운 통계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통계조사를 방지하고 통계작성 비용 절감과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경감
  - (통계정확성 제고) 통계작성 시 보다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으로 행정통계의 정확성 제고

행정통계 작성 흐름도

업 무	추진 내용	주 체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작성개요, 소요예산 등	지자체
작성항목 설계	• 조사표 항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기본항목 선정 및 자율항목 개발	지자체 (대행기관)
통계작성 승인신청	• 통계작성 승인신청 자료 준비 및 의뢰 - 통계 작성개요, 기획서, 결과표 등	지자체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행정자료 입수 가능시기 파악 • 입수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료 입수	지자체
통계표 작성 및 결과공표 통계표 작성 및 분석	• 데이터 정비 및 통계표 작성	지자체 (대행기관)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KOSIS,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표 게시	지자체

제2절 노인등록통계 개요

일반현황

- 통계명: 노인등록통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통계
- 작성방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 및 공표주기: 1~3년 주기로 작성·공표
  - 지속적인 노인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3년 주기로 작성·공표
- 개발 배경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생애주기(노인)별 맞춤형 통계 필요
  -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자료를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통계 개발

활용분야

- 시·군(구)별 고령화 추이 및 인구이동 전망

  ※ 구·군별 노인 성별·연령대별 분포, 사망률, 전출(입)이동 및 전출(입)사유 등

- 취약계층 분석(현재, 향후), 노인돌봄정책 대상자 검토

  ※ 노인 연령대별 건강, 소득, 고용 등

-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 분석

  ※ 복지서비스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험 및 연금 수급현황 등

노인등록통계 현황

통계명	지역	작성여부	최초 연도	주기
광주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광주시	○	2017	2년
대구광역시노인등록통계	대구광역시	○	2018	3년
전라남도노인등록통계	전라남도	○	2018	3년
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울산광역시	○	2018	3년
김포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김포시	○	2018	2년
의정부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의정부시	○	2018	2년
고양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고양시	○	2018	2년
양주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양주시	○	2018	2년
용인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용인시	○	2018	2년
연천군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연천군	○	2018	2년
의왕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의왕시	○	2018	2년
안산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안산시	○	2018	2년
구리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구리시	○	2018	2년
남양주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남양주시	○	2019	2년
포천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포천시	○	2019	2년
이천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이천시	○	2019	2년
동두천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동두천시	○	2019	2년
안성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안성시	○	2019	2년
오산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오산시	○	2019	2년
여주시노인등록통계	경기도 여주시	○	2020	3년
인천광역시노인등록통계	인천광역시	○	2020	2년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 관련 통계 현황

구분	고용보험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연금통계	국민건강보험통계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시작	1997년	2011년	2006년	2006년
작성주기	월	1년	1년	1년
작성대상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장기요양 신청·인정자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건강보험 적용인구
공표범위	시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행정집계	행정집계	행정집계

- 고용보험통계

작성목적	• 고용보험사업 시행에 의해 축적된 행정DB를 용하여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유형	• 보고통계
작성주기	• 월
작성단위	• 고용보험적용사업장 및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작성체계	• 지방노동관서 → 한국고용정보원
작성항목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모성보호 등 각 고용보험사업 내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작성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관해 수치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 생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령화 시대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
작성유형	• 보고통계
작성주기	• 1년
작성단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자
작성체계	• (등급판정자) →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력) → 정보관리실(데이터 관리) → 정책연구원(데이터 발췌) • (장기요양급여자) → 장기요양기관(청구) → 정보관리실(심사 및 지급 DB구축) → 정책연구원(데이터 발췌)
작성항목	•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 신청·인정 현황, 장기요양 급여실적, 장기요양기관 수 및 인력 현황, 장기요양 재정 현황 등

국민연금통계

작성목적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자료로 활용
작성유형	• 보고통계
작성주기	• 1년
작성단위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작성체계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기금 현황: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작성항목	• 가입자현황 35개, 징수현황 10개, 급여현황 66개, 심사청구현황 2개, 기금현황 5개

● 건강보험통계

작성목적	•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자료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유형	• 보고통계
작성주기	• 1년
작성단위	• 건강보험 적용인구
작성체계	• 적용인구, 보험료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진료실적 등: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작성항목	• 건강보험 일반현황: 적용인구, 요양기관, 건강보험 재정현황, 건강보험 급여실적, 건강보험 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개요, 질병통계, 부록

● 검토 내용 및 결과

부분	자료명	내용	반영 여부	비고
일자리	고용보험 통계	•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현황 •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국민연금 통계	• 가입자격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X	가입대상의 낮은 포괄범위로 미반영
		• 연금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	
건강	건강보험 통계	• 건강보험 적용인구 • 요양급여실적 • 만성질환 진료인원 • 만성질환 진료비 • 주요암 진료인원 • 주요암 진료비 • 건강검진 수검률	○	만성질환, 주요암 종류 축소 반영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
출처	• 통계자료명까지 제시	• 일부 통계자료의 경로 명시
항목추가		• 노인 학대 건수(유형별) • 노인 학대 발생 장소 • 노인 학대 행위자(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 최근 3년간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 산업분포별 사업자등록 현황 • 주택자산가액별 주택 소유자 현황 • 건강검진 수검률
자율지표 확대	• 지역사회조사 관련 항목은 기본(선택)항목 -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 월평균 노인가구 생활비 - 노인가구 부채 여부 및 주된 이유 - 노인이 느끼는 문제	• 사회조사 관련 항목을 자율지표로 변경 ※ 단, 기존 사회조사의 가중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표범위를 추정한 후 상대표준오차(RSE)를 검토하여 공표범위 결정
연령대 구간 조정	• 고용보험자료(4항목) 및 구직신청자료(6항목)로 작성하는 통계표의 연령대 4개 구간	• 고용노동부에서 EIS(고용행정통계)에 공표하는 수준으로 작성 가능하도록 연령대 구간 축소 ※ 단, 작성 주체의 필요에 따라 기존 4개 구간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K-익명성 검토 필요
SDC 활용	• 국세청 자료(사업자등록 현황 4개)	• 기업통계등록부(SBR)(사업자등록 현황 5개)

활용시 유의사항

-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되, 작성기관별로 필요한 지표(통계표)와 예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통계 작성을 기획하여야 함
- 기본항목 중 공통항목은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통계표 구성 시 포함할 것을 권고함
- 기 조사자료를 활용할 시, 조사별 활용목적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세부범위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표 등의 외부 유출에 주의하여야 함

2 PART

통계작성 기획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제2절 **통계표 설계**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02 통계작성 기획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추진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성체계 구축

작성개요

- 작성목적
  - 빠른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 작성기준
  - 작성 기준년도 12월 1일 기준
  -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시점(6월 말 등) 및 인구총조사(11월 1일) 등으로 작성 가능하나 12월 말 기준자료를 포함하여 작성(시점 명시 필수)
- 작성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작성 및 공표주기
  - 지속적으로 노인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3년 주기로 작성·공표

- 작성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 SDC(통계데이터센터), MDIS(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기초로 구축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항목
  -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부문별 항목

업무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요 추진 업무	소요기간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서 수립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1~2개월
통계작성 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3~4개월
	통계작성 승인 신청	1~2개월
	행정자료 검토	2~3개월
	행정자료 입수	4~5개월
통계표 작성	지자체 및 공공기관 행정자료 활용	2~3개월
	집계표로 자료 입수	2~3개월
결과 분석 및 공표	결과보고서 작성	2~3개월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1~2개월

* 기본항목(공통, 선택) 활용으로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소요기간 단축 가능

필요예산 관리

- 필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산출

| 필요예산 산출 검토내역 |

구분		내용	검토내역	비고
작성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비용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 등 회의 여비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 등 간담회 비용	
통계 작성	행정자료 입수 및 연계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간담회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분석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보고서 검토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보고서 검토협의 간담회	
	공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인쇄단가×인쇄부수

* 통계청 및 외부기관 등 용역의뢰의 경우는 연구비 등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작성예시 | 필요예산 산출내역(예시)

| 노인등록통계 예산*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계	18,000	
■ 일용임금	10,005	
- 업무보조원	10,005	76,960원×1명×130일(주휴수당 포함)
■ 운영비	5,194	
- 보고서 인쇄	3,000	
- 자문료	1,000	
• 작성항목 설계	250	250,000원×1명×1회
• 보고서 작성	250	250,000원×1명×1회
• 정책활용	500	250,000원×1명×2회
- 기타운영비 등 (사무용품, 홍보용품 등)	654	소모품, 홍보용품 구입
- 공공요금	400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 특근매식비	140	7,000원×20일×1명
- 장비임차료	-	장비 임차료(기존 PC 활용)
■ 국내여비	1,100	
- TF 회의, 자문회의 등	440	110,000원(2명 기준)×4회
- 행정자료 입수	330	110,000원(2명 기준)×3회
- 관련기관 업무협의	330	110,000원(2명 기준)×3회
■ 업무추진비	600	
- 업무 협의회	600	업무협의(30,000원×5명×4회)
■ 민간이전	1,101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1,101	일용임금×11%

* 공무원 관리비(인건비)는 미포함, 민간 및 용역 시 추가예산 필요

제2절 통계표 설계

주요내용

- 공통항목을 포함하여 통계작성 목적에 맞게 항목 설계
- 관련 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항목 개발

2-1 통계표 체계

통계표 체계

- 통계표는 크게 기본통계표와 자율통계표로 구분
  - (기본통계표) 기본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통계표로, 필수적인 공통 통계표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통계표로 구분
  - (자율통계표)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통계표

기본통계표(공통/선택)

(단위: 개)

부문	기본통계표		합계
	공통통계표	선택통계표	
계	24	45	69
인구·가구	13	7	20
경제능력	1	3	4
일자리	5	12	17
복지	3	12	15
건강	2	11	13

2-2 통계표 구성

기본통계표

- 기본통계표(선택통계표 포함)는 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5개 부문의 69개 통계표로 구성
  - 노인의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부문에 대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분류지표로 구성

지자체 자율통계표 개발

- 지역사회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작성 주체의 판단에 따른 자율통계표로 분류
  -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경우, 기존 공표범위와 상이하게 집계하더라도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조사의 기존 가중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표범위를 추정한 후 공표범위에 따른 상대표준오차(RSE)를 검토하여 공표범위를 결정해야 함
- 기본통계표 이외에 별도로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율통계표로 추가 가능
-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대내외 담당부서 등)
  - (2단계) 수요항목에 대응하는 자료원 발굴 및 확보 가능성 검토
  - (3단계~끝)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기반한 자율통계표 개발 및 제공

| 수요조사 서식(예) |

소속 (부서)	부문 명칭	작성 항목	용도	비고

적용 분류체계

- 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1. 시행)

대 분 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2-3 주요 통계표

기본통계표 현황(공통 및 선택)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인구·가구 (20)	인구총조사	연도별 인구규모	○	63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	63
		성별·지역별 노인인구	○	63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	63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	64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	64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	64
	인구동향조사	연도별 사망률	○	66
		지역별 사망률	○	66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 순이동	-	68
		전입인구	○	68
		전입사유	-	69
		전출인구	○	69
		전출사유	-	69
		연도별 전입인구	○	69
		연도별 전출인구	○	69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	72
	장래인구추계	장래노인인구 추이	-	74
	장래가구추계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	76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별 사망률	-	79
경제능력 (4)	주택소유통계	개인소유 주택 현황	-	81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	81
		소유 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	82
		주택자산가액별 주택 소유자 현황	-	82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일자리 (17)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 현황	○	84
	고용보험자료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86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86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	86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87
	구직신청자료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	89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	89
		구직희망 고용형태	-	89
		구직희망 근무지역	-	89
		최근 3년간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	90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	90
	기업통계등록부 (SBR)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	93
		산업분포별 사업자등록 현황	-	93
		성별 사업자등록 현황	-	93
		조직형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	93
		등록상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	94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	96
복지 (1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98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	101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	101
		장애등급별 장애인등록 인구	-	101
	기초연금 수급자료	연도별 기초연급 수급인구	-	103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	103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10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10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106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106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	108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	108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108

부문	자료명	작성통계표	공통	페이지
복지 (15)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	110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	110
건강 (13)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인구	○	112
		요양급여실적	-	112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	113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113
		주요 암(6종) 진료인원	-	113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113
		건강검진 수검률	-	113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	115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	115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	1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 학대 건수(유형별)	-	118
		노인 학대 발생 장소	-	118
		노인 학대 행위자(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	118

자율통계표 현황(표준매뉴얼 사업참여 지자체 작성예시)

구분	자료명(원)	작성통계표
대구광역시 노인등록통계	사회조사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월평균 노인가구 생활비
		노인가구 부채 여부 및 주된 이유
		노인이 느끼는 문제
울산광역시 노인등록통계	사회조사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월평균 노인가구 생활비
		노인가구 부채 여부 및 주된 이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노후 요양 장소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주요내용

-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작성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변경승인 절차 등 참고

통계작성승인 제도

-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 유사·중복 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제거
-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승인통계의 변경사항(작성년도, 주기, 통계표 구성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사전 통계작성 승인 요건에 해당됨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작성 승인 요건
  - 기승인 통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것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통계작성 승인 사항
  -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기준 준수 여부

통계작성 승인

- 승인 관련 부서
  - 광역시·도 단위: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시·군·구 단위: 관할 지방청 지역통계과
- 통계작성 승인 절차도

처리절차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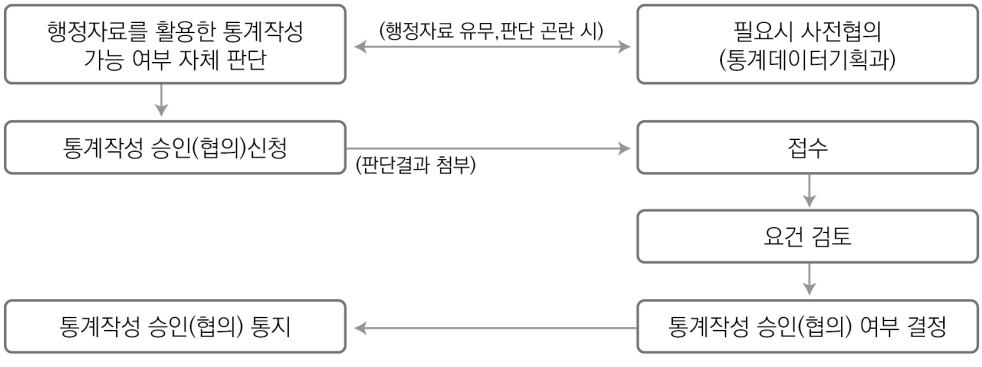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해당 통계의 조사 등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승인 신청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별지 제7호)
  - 첨부서류 등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
      (예: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⑦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자체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⑧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참고자료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5.〉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 · 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시 노인등록통계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지정 [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지역의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④ 통계작성 사항(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인구·가구(20), 경제능력(4), 일자리(17), 복지(15)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 가구 [○],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해당없음
	대상 범위 및 규모: 20○○. ○○. ○○. 현재 ○○시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대상 지역: ○○도 ○○군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기준년도 12. 31.(항목에 따라 상이함)
⑦ 조사(보고) 기간	해당없음
⑧ 작성 주기	○년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 ]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 가공	이용통계명: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명: 인구DB, 가구DB, 주택소유통계DB, 직역연금DB, 기업통계등록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록, 고용보험, 구직신청, 건강보험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교통사고 경찰DB, 노인학대현황보고서

⑩ 통계작성 체계: 각 기관의 자료를 가공, 분석 (○○지방통계청 ↔ ○○시, 역할분담 및 협력)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표준분류: , [ ] 그 밖의 분류:
⑫ 통계결과 공표: 작성년도 12월 말 (보고서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20○○년 ○월 중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작성방법

④ 통계작성 사항: 조사(보고)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 대상
○ 모 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 · 가구 · 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 ·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 · 면 · 동 → 시 · 군 · 구(과/팀) → 시 · 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체계: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을 적습니다.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0000년 00월, 전송 예정일(0000년 00월))

⑭ 해당 통계 작성 시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 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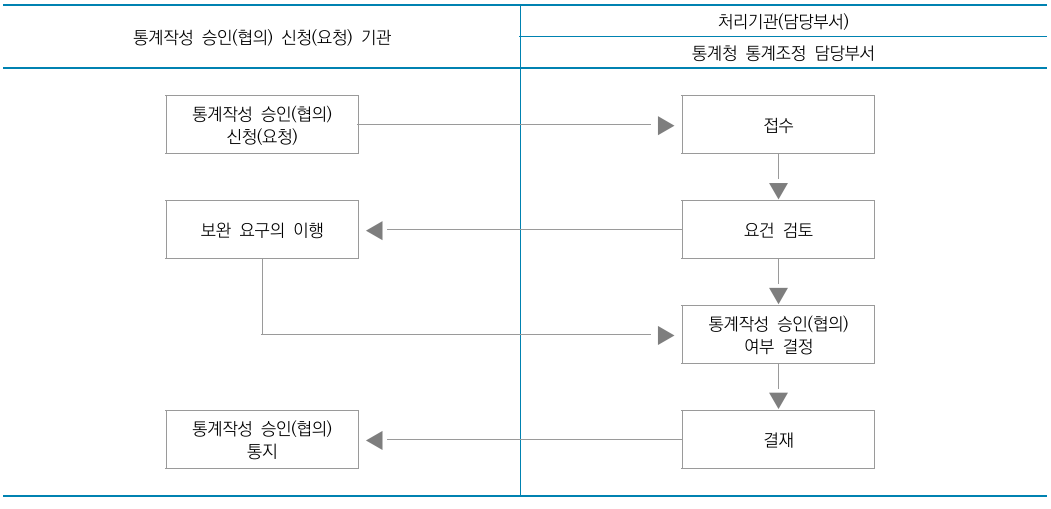

참고자료 통계작성 기획서

노인등록통계 작성 기획서

1. 통계 개관

1 신청사유:

2 통계명(영문): 노인등록통계(영문:)

3 통계작성기관: ○○○(부서명)

- 인터넷 주소:
- 전화번호: ( ) -

4 통계의 종류

- 통계종류: 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 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기입합니다.
- 통계작성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기입합니다.

5 작성연혁

- ○○○○년 ○○월: 최초 조사
- ○○○○년 ○○월: 제2회 조사
- ○○○○년 ○○월: 제3회 조사

2. 통계작성근거

1 작성목적: 통계작성 목적을 2~3줄 정도 요약하여 기입합니다.

2 관련법령: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문을 기입하고 관련 법령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입합니다.

3. 통계작성방법

1 작성대상: 통계작성 대상 및 범위와 대상 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작성항목: 작성항목 수 및 작성항목명을 기입합니다.

3 자료수집 체계: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과정을 최초 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기입합니다.

4 작성주기: 매월, 매년, 2년주기, 3년주기 등 해당 작성주기를 기입합니다.

5 공표범위

- 지역: 시도, 시군구 등 공표범위가 시도인 경우 시도, 시군구까지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까지 기입합니다.
- 내용: 통계표에 나오는 주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4. 통계활용지원

1 공표주기: 매월, 매년, 2년주기, 3년주기 등 해당 공표주기를 기입합니다.

2 공표시점: 익년 8월, 익익년 3월 등 작성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기준년도 ○○년 ○○월로 기입합니다.

3 공표방법: 보도자료, 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게재

4 국제기구 제출여부: 국제기구에 제출할 경우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입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이라 기입합니다.

5. 기 타

1 해당 통계예산: 해당 통계작성 예산을 천원단위로 기입합니다.

2 관련 통계명: 본 통계와 관련된 통계가 있으면 그 통계명을 기입합니다.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 승인 관련 부서
  - 광역시·도 단위: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시·군·구 단위: 관할 지방청 지역통계과
- 승인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및 협의를 거친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 모집단, 작성항목 등 승인내용 중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이 필수적임

변경승인(협의) 대상	구체적 예시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명칭, 종류(일반통계/지정통계)
2. 통계의 작성 목적	근거법률 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조사항목 등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
4. 통계작성의 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범위, 대상지역 등
5. 기준시점 · 기간 및 주기	작성기준시점, 작성(조사)기간, 작성주기 등
6.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전수, 표본), 보고, 가공통계
7. 자료수집 체계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 (예: 시군구→시도→작성기관)
8. 분류 및 기준	표준(무역, 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분류 등
9. 조사표, 보고서식, 통계표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작성기준 명) 또는 비준수

-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도

처리절차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협의요청)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통계청 통계조정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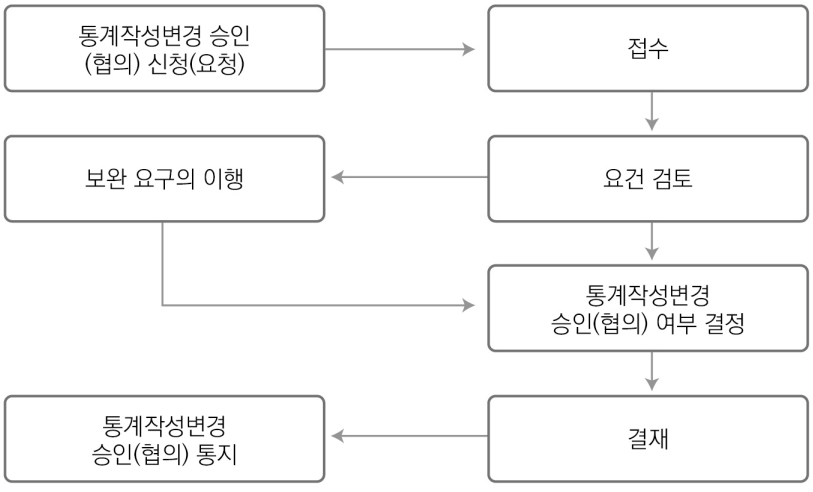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받은 사항을 변경승인(협의)을 받으려면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 및 보완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내에서 실시

-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별지 제8호)
  - 변경 사항과 관련 첨부서류 등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 통계작성 승인신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개요 포함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
      (예: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⑦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⑧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참고자료 통계작성변경 승인(협의)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1. 5.〉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 · 조사(보고) · 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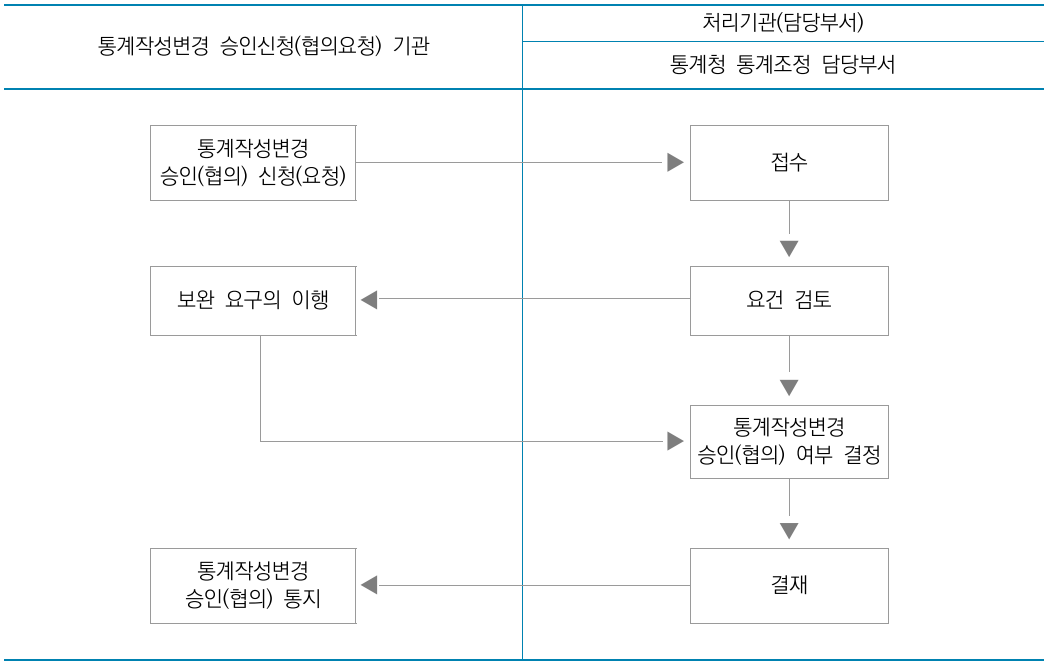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주요내용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완 관리 등 협의
-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자료보유 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

- 열악한 조사환경, 국민 응답부담 경감 차원,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사전에 공감대 형성 필요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 설명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을 설명

  * 단,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대체식별번호(PIN)로 변환 후 삭제하여 개인식별정보 입수 차단

최소한의 자료요청으로 제공기관의 부담 경감

- 자료제공 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등 제공범위 등에 관한 협의 추진

활용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행정자료별 레이아웃 및 속성 등 기본정보는 보유기관에서 사전에 입수하여 자료요청 및 입수 시 활용

4-2 행정자료 입수

행정자료 입수 절차

입수 절차	세부 내용
필요자료 파악	•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 보유기관, 보유행정자료 및 활용 가능한 조사통계 등
입수계획 수립	• 기준시점, 입수범위, 입수방법, 입수항목 등 입수계획 수립
입수 협의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 • 자료 보유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자료 입수	• 자료보유기관과 협의하여 문서로 요청
자료 활용	• 입수한 행정자료를 연계 방법에 따라 활용

문서상 요청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행정자료 제공기관 및 주요 내용

부문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입수시기*
인구·가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 인구 현황 • 노인 인구·가구 현황	7월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연도별·지역별 사망률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입·전출 현황	5월
	인구·가구통계등록부	통계청	• 가구원수별 노인인구	12월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장래노인인구 추이	5월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12월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사망원인별 사망률	9월
경제능력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주택 소유 현황	11월
일자리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 현황	7월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현황	5월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 구직신청건수 • 구직희망 고용형태·근무지역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5월
	기업통계등록부	통계청	• 사업자등록 현황	11월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지자체	•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담당자 협의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지자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담당자 협의
	장애인등록인구	지자체	• 장애인등록 인구	담당자 협의
	기초연금수급자료	지자체	• 기초연금 수급인구	담당자 협의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현황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담당자 협의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인구	9월
건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 요양급여실적 •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주요 암(6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건강검진 수검률	10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건수	6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현황	6월

* 행정자료별 입수시기는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수시기 이후로도 원자료에 대한 검토·DB화 작업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료입수 일정을 조정

3 PART

통계표 작성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03 통계표 작성

주요내용

- 통계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표 작성
- 타 기관 원자료 입수가 어려운 경우는 집계표로 자료 요청

행정자료 활용

부문	자료명	주요 내용	입수처	입수시기
인구·가구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입·전출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5월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		9월
	인구·가구통계등록부	• 가구원수별 노인인구	통계데이터센터(SDC)	12월
	인구총조사	• 인구 현황 • 노인 인구·가구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7월
	인구동향조사	• 연도별·지역별 사망률		9월
	장래인구추계	• 장래노인인구 추이		5월
	장래가구추계	•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12월
경제능력	주택소유통계	• 주택 소유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11월
일자리	지역별고용조사	• 경제활동인구 현황		7월
	기업통계등록부	• 사업자등록 현황	통계데이터센터(SDC)	11월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 지자체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부문	자료명	주요 내용
일자리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장애인등록인구	• 장애인등록 인구
	기초연금수급자료	• 기초연금 수급인구

집계표로 자료 입수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원자료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집계표 형태로 요청
  - 대상자료, 집계기간, 집계단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계표의 표측 및 표두 항목 구분을 자세히 정의한 후 제공 요청

부문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요청시기
일자리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보험 현황	5월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구직신청건수 • 구직희망 고용형태·근무지역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5월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담당자 협의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인구	9월
건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 요양급여실적 •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주요 암(6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건강검진 수검률	10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입수

- 보건복지부, 도로교통공단, EIS(고용행정통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작성예시 | 집계표 요청 양식(예시)

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가입인구

(단위: 명, %)

구 분			국민연금 가입인구	구성비	5년 미만	구성비	5년~10년 미만	구성비	10년~15년 미만	구성비	15년 이상	구성비	국민연금 가입비율[1]
20○○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20○○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성별	남성												
	여성												
지역별	00시												
	⋮												
	**군												
연령별	65~70세												
	⋮												
	80세 이상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자료

주석: 1) 국민연금 가입비율 = 국민연금 가입인구 / 주민등록인구 × 100(%)

4 PART

결과 분석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04 결과 분석

주요내용

- 설계한 결과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고,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통해 결과표 확정
- 이용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

관련 자료와의 수준분석

- MDIS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집계 결과와 KOSIS 수치와 일치여부 확인
- 행정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집계표 형태로 입수한 통계표의 경우 간행물 및 공표자료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 고용보험 통계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 자료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비교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수급자통계표: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자료 비교
- 지자체에서 작성한 행복e음 자료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자료 비교
  - 복지정보 / 사회보장통계 / 복지서비스별(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복지시설) 비교 확인

결과분석

- 정확한 통계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이용자 유의사항)
- 통계작성 목적에 부합하며 활용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통계표 구성 및 이용자료 등을 정리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나 표와 함께 그래프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유의사항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집계가 가능하므로 작성시점, 작성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에 따라 자료 해석에 유의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아래와 같음
  - 『0.0』: 해당단위 미만
  - 『-』: 해당자료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거나 수치가 5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 표기함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 목	수록내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국가통계 승인마크 및 승인번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통계작성대상연령, 통계작성기간 등, 문의처
목차	• 통계개요, 주요 활용 행정자료, 통계표, 결과 분석 등
통계개요	• 작성목적, 법적근거, 작성연혁, 작성주기, 작성기간, 결과 공표 등
활용 행정자료	• 행정자료명, 제공기관, 관련 주요 작성항목
작성통계표	• 통계표 파트(부록)에서 작성된 모든 통계표를 목차순으로 수록
주요 결과 요약	• 보고서의 부문별 결과에 앞서, 요약된 내용을 수록
부문별 결과	• 부문별, 작성항목별 통계가 나타내는 주요 수치, 그래프, 통계표 요약 수록
부록	• 통계표, 주요용어, 행정자료 서식

최종보고서 오류 점검 내용

부문	세부항목	점검내용
보고서 구성	표지	간행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국가통계 승인마크 및 승인번호가 있는가?
	용어, 개요 등 설명	결과 요약(요약 보고서)이 기술되어 있는가?
		작성연혁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한 설명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문의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행정보	발행일, 발행처, 발행기관이 제시되어 있는가?
	기타	주요 용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통계 결과물만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내용	행정자료 및 작성항목	주요 활용 행정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행정자료별 주요 작성항목이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 및 그래프	통계표(그래프) 형태의 일관성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에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작성예시 | 이용자 유의사항

이용자를 위하여

- 「○○시 노인등록통계」는 ○○도 ○○시 각 과, 중앙행정기관 및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출처를 표기하였음
-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 및 행정자료 입수 사정에 따라 시점(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0」: 해당 단위 미만

  「-」: 해당 자료(숫자)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거나 수치가 5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 표기함

※ 본 보고서는 ○○시·군 홈페이지(https://oooo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는 ○○시·군 ○○과(☎000-000-0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5 PART

자료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05 자료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주요내용

- 통계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제공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

- 통계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등을 통계 이용자에게 안내
  - KOSIS(http://kosis.kr): 통계표
  - 지자체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고서, 통계포털 등
- KOSIS 통계표 수록을 위한 이용 방법
  -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통계DB시스템) http://stat.kosis.kr/nsist

    ※ 자세한 사항은 통계D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DB시스템 자료실에 수록)

담당자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통계설명자료 제공

- 각종 통계 설명자료(예: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를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주요내용

- 행정통계를 생산할 때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적·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통계법 제4조의3(국가 등의 책무),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등에 의하여 처벌 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자료 활용 시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부처 협의	• 통계법 제24조, 제33조 비밀보호의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제공 결정	• 제공기관이 원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암호화
자료 입수	• (온라인)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프라인) 개별 방문하여 보안 USB를 통한 저장 후 보안봉투에 봉인 후 제출
자료확인, 정제 및 DB 구축	•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수자료 서버에 장착 • 개인식별번호를 보안번호로 변환 후 자료정제 및 DB 구축
통계작성 활용	•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 • 개인PC로 다운로드 및 화면캡쳐 불가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 행정자료 보완을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구축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 입수한 행정자료의 개인 식별번호는 암호화를 거쳐 보안식별번호로 대체
  -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의무
- 외주용역 사업 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6 PART

부 록

1. 통계표 설명서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3. 작성계획(안)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지역통계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부록 1 통계표 설명서

부문	인구·가구

자료	인구총조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총조사	통계청	• 인구 현황 • 노인 인구·가구 현황

자료 설명

-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은 가공통계, 표본조사를 통해 5년 주기(0자, 5자 연도)로 작성하는 세부 특성항목은 조사통계임
- 인구총조사는 1960년 이후부터는 5년 주기 전수/표본조사를 실시함. 2015년부터 전수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년 작성함
- 공표주기는 1년, 공표시기는 작성기준 년 익년 7월(전수 등록센서스 방식), 공표범위는 시군구임
-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인구부문, 가구부문, 시계열연계 분류로 제공

주요 용어 설명

- 노인인구비율: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text{성비}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인구}}{\text{총인구(외국인 포함)}} \times 100$$

- 성비: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

$$\text{성비} = \frac{\text{남자 인구}}{\text{여자 인구}} \times 100$$

-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노년부양비 = \frac{65세\ 이상\ 인구}{15 \sim 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노령화지수 = \frac{65세\ 이상\ 인구}{0 \sim 14세\ 인구} \times 100$$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작성방법

- KOSIS의 인구총조사 통계표를 활용하여 집계표 형식으로 작성
-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인구 DB, 가구 DB를 활용
- 유의사항
  -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 0시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 기준으로 하며,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또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한다면 가구원으로 포함.
  -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시, 기준일은 12. 31. 기준이 적합하나 시의성 또는 다른 자료들과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른 기준일로 설정 가능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인구규모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분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연령 및 성별 인구

공통

|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남성		여성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연령 및 성별 인구

공통

| 성별·지역별 노인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남성		여성		성비	노인 (65세이상)		남성		여성		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연령 및 성별 인구

선택

|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

(단위: 명, %)

구분	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1인가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성별			
													남		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 → 전수부문 → 1인가구 →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공통

|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

(단위: 가구, %)

구분	노인가구(65세 이상) 일반 가구		친족가구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공통

|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

(단위: 가구, %)

구분	노인가구 (65세 이상) 일반 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외 거처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공통

|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

(단위: 가구, %)

구분	노인가구 (65세 이상) 일반 가구		자기 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 → 표본20% → 표본기본표 → 가구주의 연령별/점유형태별 가구

부문	인구·가구

자료	인구동향조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연도별 사망률 • 지역별 사망률

자료 설명

-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는 4종 신고 이외에 기아발견조서, 실종선고, 혼인취소신고내용을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관련 사항을 통계청으로 송부,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
  - 인구동향조사 조사표는 대법원 가족관계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 가족관계신고서에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반영하고 신고인의 신고를 통해 자료 수집
- 인구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 MDIS 다운로드 서비스 시스템에 연간자료 A형과 B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A형은 시도와 1세 연령, B형은 시군구와 5세 연령구간 자료로 제공
  - 시군구와 1세 연령별 자료가 필요할 경우, 원격접근서비스(RAS) 사용 신청이 필요함
    ※ 원격접근서비스(RAS) 사용 방법은 MDIS 홈페이지 참고

주요 용어 설명

- 사망: 출생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 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 상태
- 조사망률: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연도의 연간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조사망률 = 해당연도 사망자수 / 해당연도 연앙인구 × 1,000(또는 100,000))

작성방법

- KOSIS의 인구동향조사 통계표를 활용하여 집계표 형식으로 작성
  - 연령대 구간이 합해지는 경우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해 주민등록연앙인구 활용

    ※ KOSIS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인구동향조사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사망률 |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시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 출처: 인구 → 인구동향조사 → 사망 →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사망률

※ 출처: 인구 → 주민등록인구현황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공통

| 지역별 사망률 |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전체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 출처: 인구 → 인구동향조사 → 사망 → 시군구 성 연령(5세별) 사망자수·사망률

※ 출처: 인구 → 주민등록인구현황 →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부문	인구·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전입·전출 현황

자료 설명

- 읍면동에서 접수한 전입신고서 전산처리 결과를 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서 전국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송하고, 통계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주민전송망센터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중계시스템 → 통계청

주요 용어 설명

- 이동: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 전입: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
- 순이동: 총전입자수와 총전출자수의 차이
- 시도간 이동: 시도 경계를 넘는 거주지 이동
- 시도내 이동: 동일 시도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 시군구간 이동: 동일 시도내에서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
- 시군구내 이동: 동일 시군구내에서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

작성방법

- KOSIS 자료 활용(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인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 전입사유 및 전출사유는 KOSIS에서 제공하지 않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MDIS 다운로드서비스 이용(자료이용 → 다운로드서비스 → 인구 →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관련연간자료)

    ※ 연령별 인구이동통계 집계를 위해 「세대관련연간자료」가 아닌 「인구관련연간자료」사용

- 유의사항
  - 다운로드시 용량 축소를 위해 시도 코드 등에서 옵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전입과 전출의 행정구역 코드가 같은 레코드를 제외하고 집계해야 함
  - 전입사유 및 전출사유의 코드는 동일함(테이블 정보 참조)
  - MD의 하나의 레코드는 최소 1명, 최대 10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전 데이터 핸들링이 다른 데이터셋과는 다름에 유의

통계표 구성

선택

| 지역별 순이동 |

(단위: 명, %)

구분	전체		노인 (65세 이상)					
		순이동률		순이동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 출처: KOSIS →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성/연령(5세)별 순이동자수·이동률

공통

| 전입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노인인구 (65세 이상) 전입인구		시군구내 전입		시군구간 전입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KOSIS →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선택

| 전입사유 |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전입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MDIS → 자료이용 → 다운로드서비스 →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관련연관자료

공통

| 전출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노인인구 (65세 이상) 전출인구	시군구내 전출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KOSIS →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선택

| 전출사유 |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전출인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MDIS → 자료이용 → 다운로드서비스 →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관련연관자료

공통

| 연도별 전입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전입인구	시군구내 전입	시군구간 전입	시도간 전입	전입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KOSIS →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공통

| 연도별 전출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전출인구	시군구내 전출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출	전출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KOSIS → 국내인구이동통계 →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부문	인구·가구

자료	인구·가구통계등록부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통계청	•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자료 설명

- 통계청은 27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인구총조사 등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센서스에서 제외된 인구와 혼인, 이혼 등의 자료를 추가하여 인구 관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는 11. 1. 0시기준 대한민국에 상주(거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지만, 기해외체류, 국외이주, 이민, 사망, 국적상실, 말소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자, 미상 등은 제외
- 인구부문 작성 시 단순한 현황 자료는 KOSIS 인구총조사 통계표 및 주민등록자료를 활용 가능하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사용 시 통계데이터센터(SDC) 통해 활용 가능

주요 용어 설명

-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친족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친족가구), 1인가구로 구성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함
- 외국인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집단가구: 남남이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세대구성

-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 2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 3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부부+자녀+양친(또는 한부모), 부부+자녀+손자 등)
- 4세대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

거처종류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매매 가능)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거주용 건물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주 공간
-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작성방법

-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인구·가구통계등록부 자료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통계표 집계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통계표 구성

공통

|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

(단위: 가구, %)

구분	노인가구(65세 이상) 일반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부문	인구·가구

자료	장래인구추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장래노인인구 추이

자료 설명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인구
- 추계인구는 기준일이 7월 1일 연앙(年央)인구로, 과거인구에 대한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

주요 용어 설명

-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인구
-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text{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text{노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0 \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작성방법

- KOSIS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주요 인구 지표를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통계표 구성

선택

| 장래노인인구 추이 |

(단위: 명, %)

구분	추계인구		유소년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인구 → 장래인구추계 → 시도 → 20○○년 기준 → 성/연령별 추계인구(5세별)

※ 출처: 인구 → 장래인구추계 → 시도 → 20○○년 기준 → 주요 인구 지표

부문	인구·가구

자료	장래가구추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자료 설명

- 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임
  - 일반가구(친족가구, 비친족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 등) 대상이며, 집단가구(시설가구, 비친족 6인 이상 가구), 외국인가구는 제외
- 향후 사회·경제·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자료의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이나, 인구주택총조사는 11.1일임
- 장래가구추계의 기준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가구수(전수)에 혼인상태별 분포(표본)를 반영함

주요 용어 설명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임
-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 세대는 일반가구에 한하여 가구주와 그 가족의 친족관계에 따라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등으로 구분함

작성방법

- KOSIS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통계표 구성

선택

|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

(단위: 가구, %)

구분	추계 가구	노인가구 유형 및 구성비												
		노인가구 (65세 이상)		부부		부부+자녀		부(모)+자녀		기타		1인 가구		비친족가구	
			비중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KOSIS → 주제별 → 인구 → 장래가구추계 → 시도 →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

부문	인구·가구

자료	사망원인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사망원인별 사망률

자료 설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 모성, 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통계청에 전송하고, 통계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표 및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 사망원인통계는 기준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자에 대해 다음해 4월까지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에 의해 사인을 분류한 결과임
- 사례수가 적은 경우, 사망률 산출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요 용어 설명

- 사망원인: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사망원인별 사망률: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100,000)
- 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 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특정 연령의 연앙인구×1,000(또는 100,000))
- 악성신생물(암): 정상세포 이외의 세포가 생체기능에 필요도 없이 증식하여 인접 정상조직을 파괴하고 기계적, 내분비적, 화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며 원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해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 질환군을 총칭

-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내분비샘(이자, 부신, 갑상샘, 뇌하수체 등)과 영양관련 및 대사성 질환(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를 체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저장 및 분해하여 생체활동을 행하는 것을 대사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김)을 총칭
- 순환기계통의 질환: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제기관(심장을 포함한 대순환·소순환계를 말함)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총칭
- 사고 사망원인 분류

사고유형	사망원인	예시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비의도적 사고	운수사고	자동차·자전거·선박 등의 탑승자로서 충돌 등 충격으로 사망하거나, 보행자로서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충돌하여사망(V01-V9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V01-V0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V10-V1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V20-V2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차량 탑승자(V30-V79)
	추락사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W00-W19) •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낙상(W01) •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지지를 받는 동안의 낙상(W04) • 침대가 관여된 낙상(W06) • 의자가 관여된 낙상(W07) •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W13)
	익사사고	강·바닷가·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에 빠져 사망(W65-W74) • 목욕통 익사 및 익수(W65, W66) • 수영장 익사 및 익수(W67, W68) • 자연수 익사 및 익수(W69, W70)
	질식사고	베개 등의 물체에 호흡기관이 막히거나 음식물·구토물 등으로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W75-W84) • 침대에서 질식(W75) • 위 내용물의 흡입(W78) • 기도폐색의 원인이 된 음식물의 흡입 및 섭취(W79)
	화재사고	연기·불 등에 노출되어 사망(X00-X09)
	중독사고	연탄가스·농약 등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X40-X49)
	기타사고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이외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타살 제외) (W20-W64, W85-W99, X10-X39, X50-X59, Y10-Y89)
의도적 사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X60-X84)
	타살	유기·학대 및 가족 동반자살 등에 의한 사망(X85-Y09)

작성방법

- KOSIS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MDIS 다운로드서비스 이용(자료이용 – 다운로드서비스 – 보건 –사망원인통계)
- 유의사항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값이 동일한 지 확인 필요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필요

통계표 구성

선택

| 사망원인별 사망률 |

(단위: 십만명당 명)

구분	전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악성신생물(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호흡기 결핵	패혈증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구분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 출처: KOSIS → 주제별 → 보건 →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104항목) 성/연령별

※ 발췌코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호흡기결핵(A15-A16), 패혈증(A40-A41), 악성신생물(암)(C00-C97), 위암(C16), 간암(C22), 폐암(C33-C3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88), 당뇨병(E10-E14), 신경계통의 질환(G00-G98), 알츠하이머병(G30), 순환계통의 질환 (I00-I99), 고혈압성질환(I10-I13), 심장질환(I20-I51), 뇌혈관질환(I60-I69), 호흡계통의 질환(J00-J98), 폐렴(J12-J18), 만성 하기도질환(J40-J47), 소화계통의 질환(K00-K92), 간질환(K70-K7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운수사고(V01-V99), 고의적 자해(자살)(X60-X84)

부문	경제능력

자료	주택소유통계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 주택 소유 현황

자료 설명

- 주택소유통계는 개인 및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통계
  -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은 2012년 기준부터, 가구단위는 2015년 기준부터 작성(기준시점은 11월 1일)
-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국가·지자체·법인·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가구별 소유 통계에서 일반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내국인과 함께 거주)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에 포함
- 한 주택을 n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각각 1/n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주요 용어 설명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 주택의 요건: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처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주택 소유자: 직접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된 법적 소유권자

작성방법

- 지역통계행정DB와 주택소유통계를 연계하거나, 인구통계등록부, 가구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를 연계하여 해당 통계표 집계
- 인구통계등록부에서 영유아 인구를 먼저 집계 ➜ 인구통계등록부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와 가구통계등록부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 연계 ➜ 주택소유통계의 가구주대체식별번호와 연계하여 통계표 작성
- 유의사항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통계표 구성

선택

| 개인소유 주택 현황 |

(단위: 호, %)

구분	20○○년						20○○년					
	총 주택수	아파트	개인 소유 주택수	비율	아파트	비율	총 주택수	아파트	개인 소유 주택수	비율	아파트	비율

※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공통

|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

(단위: 명, 호,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수	개인 소유 주택 수(B)	구성비	동일시군구 소재주택	구성비	동일시도내 타시군구 소재주택	구성비	타시도 소재주택	구성비	소유자 1인당 주택 수 (B/A)

※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선택

| 소유 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수		1건		2건		3건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선택

| 주택자산가액별 주택 소유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주택 소유자 수 (A)		0.6억 이하		0.6~1.5억 이하		1.5~3억 이하		3~6억 이하		6억 초과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부문	일자리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현황

자료 설명

-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약 23만 2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조사
- 조사대상기간: 4월과 10월 중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일요일~토요일)
- 조사항목: (상반기) 인적사항, 일·구직·기타활동 관련 사항, 경력단절경험여부, 경력단절사유 등 31개 항목
  (하반기) 인적사항, 일·구직·기타활동 관련 사항, 취업자의 이직 빈도·사유, 비동거 맞벌이 가구 여부·사유 등 34개 항목

주요 용어 설명

- 경제활동인구: 만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취업자: 조사대상주간에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① 수입 있는 일이 없으면서, ②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③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가사, 육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작성방법

- 통계청 MDIS을 통해 지역별고용조사 MD를 반출,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는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지역(시군구)별로 성·연령별 집계 시 통계청의 공표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상대표준오차 등 신뢰성 검토 필요)
  - 시군구 연령별 실업률은 표본수가 부족하여 공표하지 않는 자료임
- 유의사항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고용·임금 → 고용 → 지역별고용조사

통계표 구성

공통

| 경제활동인구 현황 |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실업률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문	일자리

자료	고용보험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현황

자료 설명

-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해당 자료는 고용보험관련 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을 집계하여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성

주요 용어 설명

- 적용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 이하인 건설공사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한 자
- 경력취득자: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취득자 중에서 그 이전시기에 피보험자자격을 한번이라도 취득하였던 자
- 실업급여: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작성방법

-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고용노동부 실사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요청하여 작성
- 고용노동부의 공표 수준을 따를 경우, EIS(고용행정통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위: 명, %)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고용보험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공통

|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고용보험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

(단위: 명, %)

구분	자격 취득자 (전체)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분	자격 상실자 (전체)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고용보험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

(단위: 명, 천원)

구분	20○○년			20○○년			20○○년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 출처: 고용보험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부문	일자리

자료	구직신청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구직신청자료	고용노동부	• 구직신청건수 • 구직희망 고용형태·근무지역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액

자료 설명

- 해당 자료는 전국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DB로 집계한 것으로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용어 설명

- 취업건수: 해당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건수
- 희망임금: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희망하는 임금
-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적은 근로계약
-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작성방법

-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고용노동부 실사과(고용서비스정책과)에 요청하여 작성
- 고용노동부의 공표 수준을 따를 경우, EIS(고용행정통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구직희망 고용형태 |

(단위: 건, %)

구분	구직 신청건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일용직포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구직희망 근무지역 |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도		◎◎시		기타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최근 3년간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

(단위: 건, %)

구분	20○○년		20○○년		20○○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선택

|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건수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무응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구직신청자료(고용노동부) 또는 EIS(고용행정통계)

부문	일자리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기업통계등록부	통계청	• 사업자등록현황

- 기업통계등록부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무등록 제외)를 포괄하는 경제통계 부문 통합모집단임

  * 기존사업체에 대해 조사된 정보, 신생사업체는 사업자등록자료 정비결과 자료를 반영

- 연간 기업통계등록부는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하여 제공되며, 대표자기준 과 사업자등록기준으로 분류하여 제공됨

- 기업통계등록부 개요

구 분		연간 SBR	분기 SBR
통계단위		• 사업체, 기업, 기업집단 ※ 연간조사의 사업체 자료 포함	• 사업체,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법적 단위만 포함
구축시기		• 기준년도 익익년 3월	• 매 익분기 익월
주요 작성 항목	명부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조사자료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
	산업분류	❶ (통계청연간조사자료) 반영 ❷ (SBR정비자료) 반영 ❸ (국세청업종코드) 자동연계	❶ (기존업체) 연간 SBR과 동일 반영 ❷ (SBR정비자료) 반영 ❸ (국세청업종코드) 자동연계
	종사자 (유급근로자)	• 종사자수: 기준년도 말월 기준 • 종사상지위: 상시, 임시·일용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종사자수: 기준 분기 말월 기준 • 종사상지위: 상시, 임시·일용 ※ 기업 단위로 제공 (사업체 배분 안함)
	매출액	• 기업, 사업체 매출액 제공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기업 매출액(전년도) 작성 ※ 기업 단위로 제공 (사업체 배분 안함)

주요 용어 설명

- 사업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 단위
- 사업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상법, 민법과 특별법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기업
-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 회사이외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
-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암자 등

작성방법

- 통계데이터센터(SDC)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 혹은 방문 후 직접 집계·반출
- 유의사항
  - 집계표 작성 후 특정값에 대하여 KOSIS와 비교 검토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 잠정치의 경우 잠정치 표시 또는 연간, 분기 등 자료 유형 명시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사업등록자	노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사업등록자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 주: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제외(등록자 기준 집계)

선택

| 산업분포별 사업자등록 현황 |

(단위: 명)

구분	20○○	20○○		20○○	
			종사자수		종사자수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 주1: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포함(사업체 기준 집계)

* 주2: 기준년도 -1년, -2년은 연간자료, 기준년도는 4분기 자료(종사자수 제공 안함) 활용

* 주3: 종사자 수는 상용, 일용, 임시 종사자의 합

* 주4: KOSIS 경제총조사 공표수준에 따라 표측에 산업분류 제시(산업 중 T, U, 9는 제외함)

선택

| 성별 사업자등록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사업등록자		남성		여성		사업등록자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 주: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제외(등록자 기준 집계)

선택

| 조직형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

(단위: 명, %)

구분	합계		개인		법인(회사, 회사 이외)		기타(비법인, 국가·지방 자치단체)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 주: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포함(사업체 기준 집계)

선택

| 등록상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

(단위: 명, %)

구분	사업자등록		신설		유지		폐업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 주: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 중복 포함(사업체 기준 집계)

부문	일자리

자료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해당 지자체	•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자료 설명

- 공공일자리 관련 시스템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 차세대 통합 업무시스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리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취업연계 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구인구직(인력파견형)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정부 및 지자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서비스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이용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등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주요 용어 설명

- 노인일자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 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 자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이돌봄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사업임
- 노인돌봄사업: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가 있음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만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공공근로: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

작성방법

- 관련 시스템 통계관리와 실적관리 자료 추출,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 해당 통계표를 집계표 형식으로 담당부서 또는 기관에 요청

통계표 구성

선택

|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돌봄사업 (아이, 노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행정 및 공공기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부문	복지

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료	해당 지자체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자료 설명

- 해당 자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한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임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주요 용어 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7종의 급여를 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작성방법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또는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요청

통계표 구성

공통

|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노인	
			구성비	수급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부문	복지

자료	장애인등록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등록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지자체	• 장애인등록 인구

자료 설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고 공단심사를 거쳐 장애판정을 받아 등록된 장애인 자료
- 각 분야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작성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취합하여 최종 작성

주요 용어 설명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
- 장애유형: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에는 다시 외부신체기관과 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구분됨
  - ① (외부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② (내부 신체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③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④ (정신장애)정신
- 지체장애: 다방면에 걸쳐서 발생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 기능의 손상. 골격, 근육, 신경계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애
-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

- 청각장애: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
- 언어장애: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 안면장애: 얼굴, 목, 머리에 눈에 띄는 수술이나 외상 후에 생긴 흉터, 그 흉터가 커지고 함몰되거나 어느 조직 하나가 없어지거나 색소침착, 모발결손이 생기는 장애
-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이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
- 간 장애: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
- 호흡기장애: 호흡이 그 운동과정 및 폐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산소-이산화탄소 교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장이나 항문이 기능이 못하고 방광도 제 기능을 못 할 때 각각 장루와 요루라는 것을 만들어 각각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
- 뇌전증 장애: 간질이라고도 하며 뇌에 있는 수억 개의 뇌세포들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 지적 장애: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
- 자폐증: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같은 상태
- 정신 장애: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

작성방법

- 지자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또는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요청

통계표 구성

공통

| 장애인등록 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외국인 포함)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비율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선택

|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등록 인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분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선택

| 장애등급별 장애인등록 인구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등록 인구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부문	복지

자료	기초연금수급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기초연금수급자료	지자체	• 기초연금 수급인구

자료 설명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조건, 시설, 특례수급자 외에 모두 일반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은 가구구분코드가 단독가구인 경우로 추출

주요 용어 설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들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일반수급자: 중위소득이하, 근로 무능력자이고 흔히 말하는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가능
-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시설수급자: 중위소득이하, 근로무능력자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지급 하지 않고,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 특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타 법률 및 기타 수급(권)자 특례로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 포함

- 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작성방법

- 해당 통계표를 집계표 형식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요청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발간자료(보건복지부) 참조 작성
- 시스템 통계관리와 실적관리 자료 추출, 활용하여 해당 통계표 작성

통계표 구성

선택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	기초연금 수급인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수급인구 비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선택

|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

(단위: 명, %)

구분	노인인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인구		1인		1인(부부형)		2인(부부형)		국민연금 수급여부별			
										무연금자		국민연금 수급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해당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부문	복지

자료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설명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6월말에 공표하는 통계로 시군구 단위까지 집계되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

주요 용어 설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 야간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단기보호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일상생활 하는 가정의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교육 및 지역의 각종 자원을 연계 지원

작성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활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종사자수가 없음

통계표 구성

선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시설수

선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선택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시설수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선택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구분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부문	복지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자료 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대상임

주요 용어 설명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대표자

작성방법

- 해당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계표로 요청하여 작성

통계표 구성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

(단위: 명, %)

구분	신청자수	판정자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인정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 외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선택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

(단위: 명, %)

구분	신청자수	판정자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인정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 외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선택

|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단위: 명)

구분	이용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통합재가 서비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문	복지

자료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적연금·국민연금 수급인구

자료 설명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임.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함.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임

작성방법

- 해당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각 관리공단 실사과에 요청하여 작성
- 통계청 소속 직원이 작성할 경우 디지털융복합시스템의 직역연금DB 이용

※ 직역연금DB에서는 공무원과 사학연금의 수급자만 집계 가능

통계표 구성

공통

|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포함)	공적연금합계				공적연금 수급비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출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자료 또는 통계청 디지털융복합시스템 직역연금DB

선택

|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합계			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 인원	수급 금액	1인당 수급금액

구분	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수급인원	수급금액	1인당 수급금액

※ 출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자료 또는 통계청 디지털융복합시스템 직역연금DB

부문	복지

자료	건강보험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건강보험 관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적용인구 • 요양급여실적 •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주요암(6종) 진료인원 및 진료비 •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 설명

-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기준이며,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수진 기준임
- 요양급여실적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기준으로 작성함
- 질병통계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질병으로 건강보험 청구실적에 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진 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요 용어 설명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 수
- 요양기관: 환자를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 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공단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급여일수(진료일수), 요양 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약국 처방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 의료보장: 인간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개인
- 피부양자: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급자이며 그 부양가족

작성방법

- 해당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계표로 요청하여 작성

통계표 구성

공통

| 건강보험 적용인구 |

(단위: 명, %)

구분	건강보험 적용인구		직장				공무원 및 교사(사립학교)				지역	
		구성비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구성비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구성비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요양급여실적 |

(단위: 명, 천원)

구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입원			외래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실 인원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

(단위: 명)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전염병	간질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주요 암(6종) 진료인원 |

(단위: 명)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

(단위: 천원)

구분	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택

| 건강검진 수검률 |

(단위: 명, %)

구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문	건강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건수

자료 설명

- 해당 자료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대상으로 함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미포함)
-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국가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경찰DB로 각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집계

주요 용어 설명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교통사고 인적피해
  -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노인운전자사고: 가해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고

작성방법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 교통사고(경찰DB) → 부문별 교통사고 → 노인 교통사고에서 자료 수집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는 GIS분석에서 노인인구를 옵션으로 체크 후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사고유형 분류는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으로 분류하며, 이 중 철길건널목 분류는 집계에서 제외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교통사고(경찰DB) → 부문별 교통사고 → 노인교통사고

선택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

(단위: 건)

구분	합계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소계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자리 통행중	보도 통행중	기타	소계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추돌	후진중 충돌	기타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교통사고 GIS분석

* 주: 교통사고 유형은 차 대 사람, 차 대 차, 단독, 철도 건널목 등 4개이며, 철도 건널목은 집계에서 제외

선택

|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교통사고(경찰DB) → 부문별 교통사고 → 노인교통사고

부문	건강

자료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현황

자료 설명

-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주요 용어 설명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작성방법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열람하여 집계표 작성
- 유의사항
  - 집계표에서 k-익명성 확보 여부 확인
  - k-익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구의 경우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역별로 조정하거나, 세부구간을 합하여 단순화하는 방법 사용 가능

통계표 구성

선택

| 노인 학대 건수(유형별) |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주: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합계와 노인학대 유형별 합계와는 차이가 있음

선택

| 노인 학대 발생 장소 |

(단위: 건, %)

구분	계		가정 내		가정 외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주1: 가정 외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를 말함

* 주2: 발생 장소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학대건수(유형별)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선택

| 노인 학대 행위자(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

(단위: 건, %)

구분	계		배우자		자녀+손자녀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주: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 합계와 동거자 유형 합계는 차이가 있음

* 주1: 자녀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말하며 기타는 친척, 타인, 기관을 말함

* 주2: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 합계와 동거자 유형 합계는 차이가 있음

부록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 전입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 · 도) (시 · 군 · 구)		※ 시 · 도, 시 · 군 · 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 · 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 · 층 ·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 층 ·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사망 신고서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망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1남 2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1 주택 3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5 도로 7 산업장 9 병원 이송 중 사망 10 기타( )	2 의료기관 4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6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8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② 기타사항						
③ 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1동거친족 2비동거친족 3동거자			*관계	
		4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 _____								

부양의무자[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 · 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 · 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 · 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감 귀하

8) 민간 · 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4쪽 중 4쪽)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영아수당(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 · 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 · 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 ·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	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 · 군 · 구청(읍 ·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 9. 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기타 · 반납사유 [ ]사망 [ ]양도 · 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 ·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기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 ·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 · 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 (관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1.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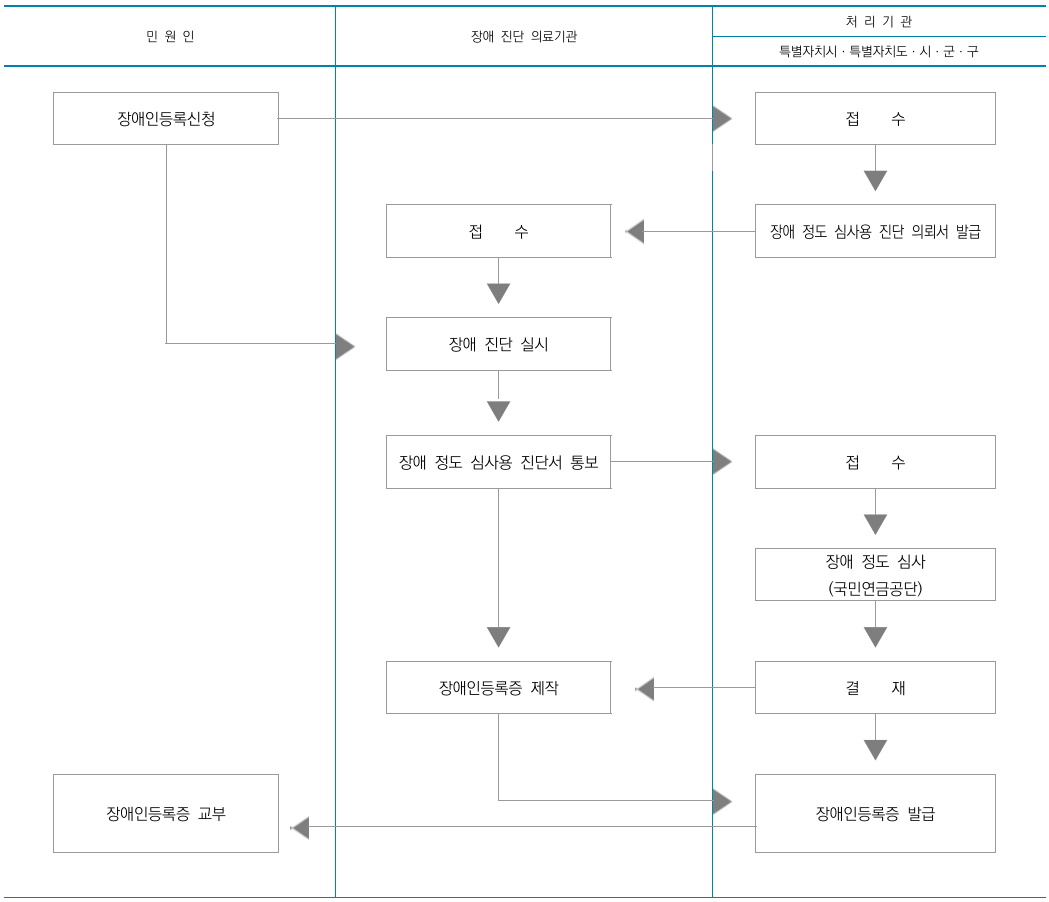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2. 6.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원)	자격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 부호	특수직종 부호	직역연금 부호	자격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보험료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보험료 직종명/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 31.〉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특수직종 근로자	[ ]광원 [ ]부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취득월 납부여부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간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 자동이체계좌 [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예 [ ]아니오			
	가입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변동) 일자	취득(변동)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부호/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구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06 부록

□ 필수 작성 사항 (뒤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학력사항	최종학력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무학				

희망취업조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희망 세부 직무내용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 )시 · 도 ( )구 · 군	2순위 ( )시 · 도 ( )구 · 군 [ ] 지역무관	
	희망임금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면접 후 결정 가능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시간(선택)제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관계 없음	[ ] 재택근무 희망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직정보 추가확인사항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보유자격 (면허)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교육훈련 이수현황	훈련 과정명	훈련기간	세부훈련내용	훈련기관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전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운전 능력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응시일	등급 · 점수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병역대체 근무희망	[ ] 산업기능요원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전문연구요원	국외취업 희망여부	[ ] 희망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서(일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에 연락하여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4.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정보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희망취업조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 ]신입 [ ]경력	(년 개월)
			[ ]신입 [ ]경력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시 · 도 ( )구 · 군 2순위( )시 · 도 ( )구 · 군 [ ] 지역무관 [ ] 재택근무		
	희망임금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면접 후 결정 가능

기타사항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8. 실업급여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1. 12. 31.〉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휴대전화번호(없는 경우 전화번호):]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 변 경 [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서 적습니다.	
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 ]	
		있음[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 ] 근로날짜 [ ] 소득금액 [ ] 소득예정금액 [ ]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 ] 없음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산재휴업급여	[ ] 없음 [ ] 있음 (수급기간:)	

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확인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	직종	구직방법	구직활동 결과
	자영업 준비활동						
	취업(예정)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직업훈련 수강 [ ] 기타 [ ]	[ ] 취업확정자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⑨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이메일:)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제69조의9·제77조의5제2항·제77조의10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제93조의2·제104조의8제8항·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15조의5·제125조의4·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쪽에 추가 작성란 있습니다. ※아래의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지급 사항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첨부서류	1. 수급자격증 1부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우편 [ ]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희망 여부(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④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 · 보관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실업인정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 2쪽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②·③란은 모두 적습니다.
3. ⑤란에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은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5. ⑦란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 작성방법〈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있음을,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있음을 선택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적습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한 일 또는 발생한 소득만 적습니다)
   - 근로날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 소득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받은 소득의 총액을 적습니다.
   - 소득예정금액: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하고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습니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는 사람만 적습니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실업인정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급여 지급 여부 결정·통지	→	급여 수급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통지	→	통지서 수령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부록 3 작성계획(안)

『○○시(군) 노인등록통계』 작성계획(안)

0000. 0.

작성기관

목 차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2. 추진 목적
3. 추진 경과

Ⅱ. 세부 추진계획

1. 작성 개요
2. 작성 분문 및 통계표
3. 행정자료 입수처 및 방법
4.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5. 행정자료 정제 및 통계작성용 자료 구축
6. 세부 추진일정
7. 소요 예산

Ⅲ. 기대효과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노인정책 지원 통계 필요)** ○○시의 지속가능한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행정통계 필요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시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발굴 지원

2 추진 목적

○○시 노인등록통계 작성 시사점

- 기관 간 공유, 협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공유
- 지역정책에 부응하는 실효성 높은 통계자료 생산
- 저비용 · 고효율의 경제적 통계생산으로 인한 통계개발 필요성 인식 및 활용성 강화

- **(통계기반 정책수행)** 지방자치시대 효율적 정책 수립과 정책평가를 위한 통계기반의 정책수행 유도

- **(정책 맞춤형 통계 제공)** 노인지원 정책의 기초자료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으로 노인정책 지원

- **(질적지표 개선)** 양적지표인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의 노인층 관련 지표제공으로 질적지표 개선에 기여

- **(활용성 제고)** ○○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기관, 학계 등 협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통계생산으로 정책활용성 제고

3 추진 경과

20○○년 노인등록통계 관련 업무협의

- (주요내용) ○○시(군) 노인등록통계 개발 추진 협의
  - 실무협의회 참여 및 ○○지방통계청 생산대행/기술지원 협의
- (일시/장소) 20○○. ○○. ○○.(○) 00:00~00:00 / ○○청 회의실
- (참석인원) ○○청 및 ○○시청 0명

○○시 노인등록통계 TF팀 구성

- (주요내용) 노인등록통계 기본방향 및 분석 주제 전반에 대한 사항 논의
- (구성인원) ○○청 및 ○○시청, ◎◎연구원 0명
  - ○○청: ○○과 ○○팀장 외 0명
  - ○○시: ○○과 ○○팀장 외 0명
  - ◎◎연구원: ○○○ 외 0명

행정자료 선정 및 입수방법 논의

- 행정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행정자료 보유 기관들과 협의
- ○○청 및 ○○시청 보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입수기관 업무부담 최소화

조사목적에 부합한 통계표 설계

-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5개 부문 00개 항목 설계
- 활용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항목 설계
- 설계된 통계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1 작성 개요

작성 목적

- 빠른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부양비가 증가하는 등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
- 지역 노인의 맞춤형 노인돌봄정책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작성 기준일: 20○○. ○○. ○○.

※ 일부 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작성 대상: 20○○. ○○. ○○. 주민등록 기준 ○○시 만 65세 이상 인구

작성 주기: 2년 (○○시 사정에 따라 1년 혹은 3년으로 변경 가능)

작성 방법: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행정자료 및 통계청 자료 가공

개발 방향

- ○○시(군) 노인지원정책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능성 제고
- 노인등록통계 표준매뉴얼을 준용하여 ○○시(군) 자체 역량으로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항목 및 통계표 구성 체계화
- ○○시 노인층의 전반적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구성

2 작성 부문 및 통계표

작성 분야: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등 5개 부문 69개 통계표

부문별 작성 통계표

부문	자료명	작성 통계표	
인구·가구 (20)	인구총조사	연도별 인구규모	성별·연령별 인구규모
		성별·지역별 노인인구	지역별 독거노인인구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거처종류별 노인가구
		점유형태별 노인가구	
	인구동향조사	연도별 사망률	지역별 사망률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 순이동	전입인구
		전입사유	전출인구
		전출사유	연도별 전입인구
		연도별 전출인구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장래인구추계	장래노인인구 추이	
	장래가구추계	가구유형별 노인가구 추이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별 사망률	
경제능력 (4)	주택소유통계	개인소유 주택 현황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 현황
		소유 물건수별 주택 소유자 현황	주택자산가액별 주택 소유자 현황
일자리 (17)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 현황	
	고용보험자료	연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연도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구직신청자료	연도별 구직신청건수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구직희망 고용형태	구직희망 근무지역
		최근 3년간 지역별 구직신청건수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기업통계등록부 (SBR)	연도별 사업자등록 현황	산업분포별 사업자등록 현황
		성별 사업자등록 현황	조직형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등록상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연도별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부문	자료명	작성 통계표	
복지 (1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인구
		장애등급별 장애인등록 인구	
	기초연금 수급자료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수혜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인구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별 신청·판정 현황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복지 (15)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인구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인구
건강 (13)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인구	요양급여실적
		만성질환(8종) 진료인원	만성질환(8종) 1인당 연간 진료비
		주요 암(6종) 진료인원	주요 암(6종) 1인당 연간 진료비
		건강검진 수검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건수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 학대 건수(유형별)	노인 학대 발생 장소
		노인 학대 행위자(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3 행정자료 입수처 및 방법

입수기준: 0000. 12. 31. 기준 각 항목별 자료 입수

행정자료별 제공기관 및 입수 방법

자료명	제공기관	입수처	입수시기	입수 방법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	7월	원격접근서비스(RAS) 시스템에서 분석 후 통계표 반출
사망원인통계			9월	
주택소유통계			11월	
지역별고용조사			7월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7월	국가통계포털(KOSIS)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인구동향조사			9월	
장래인구추계			5월	
장래가구추계			12월	
인구·가구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SDC)	12월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분석 후 통계표 반출
기업통계등록부(SBR)			11월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시(군)		연중	원자료 형태로 입수 후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장애인등록 인구				
기초연금 수급자료				
고용보험자료	고용노동부		5월	집계표 형태로 입수
구직신청자료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중	
건강보험			10월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9월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7월	제공 자료 활용하여 집계표 작성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도로교통공단		6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월	

4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행정통계 생산 추진과정) 계획수립, 자료입수 및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보고서작성 및 승인요청, 공표 및 자료제공 등 5단계로 나누어 추진

| 행정통계 작성 업무흐름도 |

계획수립 (3~4월)	→	자료입수 검토 (4~8월)	→	자료처리 분석 (7~10월)	→	보고서작성 승인요청 (8~11월)	→	공표 자료제공 (11월)
• 목적, 기대효과 • 유사통계 유무 • 항목 선정		• 자료 보유기관간 입수협의 • 결측값, 이상치, 중복자료 검사		• 자료 연계 및 분석용 DB 구축 • 자료 분석		• 분석결과 작성 • 보고서 작성 • 신규통계승인		• 결과 공표 • 보도자료 작성 • 간행물 발간
기획단계				생산단계				공표단계

- (기획단계) 통계작성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기존통계와의 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
  - (계획수립) 통계작성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유사통계 유무 여부 검토 및 통계표 선정
  - (자료입수 및 검토)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및 보안관리, 입수가능 행정서식, 내용, 보고체계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품질을 검토
- (생산단계) 입수자료를 연계하여 DB구축, 자료 분석 및 보고서작성, 신규통계 승인 등
  - (자료처리 및 분석) 입수 원자료를 통계목적에 맞게 연계 및 재구성하여 분석
  - (보고서작성 및 승인요청) 분석결과 통계표 작성 및 검토, 보고서작성 및 신규통계 승인요청
- (공표단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한 최종 통계작성 공표, 관련 자료제공 등
  - (공표 및 자료제공) 결과 공표, 보도자료 작성 및 간행물 발간

5 행정자료 정제 및 통계작성용 자료 구축

행정자료 정제 및 DB 구축과정

1단계: 행정자료 입수 및 검토		→	2단계: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	3단계: 통계 처리 및 DB 생성	
주민등록자료	복지		자료 통합연계		에디팅	마이크로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세대주와의관계 전입시기 전입전 거주지 전입사유 등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장애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구		• 행정자료 간 자료연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중복검사 • 에디팅 • 기준시점 전후 자료 첨삭	• 통계 기초자료 생성

- (1단계) 행정자료 입수 및 검토
  - (행정자료 입수) 인구, 경제, 복지 등 부문별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행정통계 자료 입수
  - (자료별 검토) 자료의 레이아웃 및 파일설계서를 작성하여 변수명 등을 검토, 데이터 속성 분석
  - (통계적 보완) 중복검사, 항목 검사, 코드 유효성검사 등을 통해 자료의 결측값, 이상치 등의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원자료 정비
- (2단계)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 (자료연계) 연계 변수(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로 자료를 병렬 병합
- (3단계) 통계 처리 및 DB 생성
  - 분석자료 유형

자료유형	자 료 명
DB 구축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등록, 기초연금수급
집계표 활용	고용보험, 구직신청, 건강보험,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인구총조사, 주택소유통계,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사망원인통계, 지역별고용조사,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6 세부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

○○청-○○시(군) 노인등록통계 개발 협의 (0000. 00.~0000. 0.)	- 행정통계 기본 개발 방향 등 업무 전반 협의 - 관련 정책부서 의견수렴 · 정책적 활용 목적에 부합한 개발 방향 제시
항목 선정 및 종합실시계획 수립 (0000. 0.~0.)	- 작성 항목 및 통계표 선정 · 기관 및 내부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 행정자료 취합 여부 확인
행정자료 입수 (0000. 0.~00.)	- ○○시 내부 행정자료(기초생활보장, 장애인등록 등) 입수 - 기관별 집계표 양식 송부 및 입수 - 행정자료분석시스템 및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한 통계표 작성
자료 검토 및 DB 구축 (0000. 0.~00.)	- 입수된 행정자료 정제 및 검토 · 행정자료의 결측값, 이상치, 중복자료 등 검사 - 통계 처리 후 분석용 DB 생성
보고서 작성 및 승인요청 (0000. 0.~00.)	- 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표 작성 -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통계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표 (0000. 00.)	- 보고서 검수 및 보도자료 작성 - 결과보고서 발간 및 공표

주요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획 및 항목 선정, 통계표 설계												
- 각 기관별 행정자료 입수												
- 입수 행정자료 타당성 검토 및 협의												
- 자료 품질 보완(비매칭, 무응답 등)												
-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업무 협의 및 승인요청												
- 보고서 결과 보고 및 설명회 개최												

7 소요 예산

소요 예산

- 예산과목: 0000-000

(단위: 천원)

총 액	일용임금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고용부담금
16,165	9,527	3,890	1,100	600	1,048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소요 예산	산출내역
소요 예산 총액	16,164,300	-
❍ 일용임금	9,526,400	-
업무보조원	9,526,400	73,280원×1명×130일
❍ 운영비	3,890,000	-
일반수용비	3,350,000	-
· 회의물품	500,000	5,000원×10명×10회
· 홍보용품	900,000	30,000원×30명
· 사무용품	150,000	30,000원×5명
· 자문료	1,800,000	200,000원×3명×3회
공공요금	400,000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매식비	140,000	7,000원×20일
❍ 국내여비	1,100,000	-
업무협의	1,100,000	110,000원×10회
❍ 업무추진비	600,000	-
협의회 및 간담회	600,000	사업별 600,000원 배분
❍ 고용부담금	1,047,900	-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	1,047,900	일용임금×0.11

Ⅲ 기대효과

○○청

- (저비용·고효율 통계생산)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 환경개선 및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이용자 맞춤형 통계생산) 행정자료 연계 등을 통한 통계생산으로 지역통계 확충 및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시

- (정책 맞춤형 통계생산) ○○시의 노인인구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 복지, 건강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통계기반 정책수행) 데이터 중심 정책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노인지원 정책 구현 및 지속적인 현상 진단 및 개성방안 발굴 기반 강화

부록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통계작성단계	표준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1. 통계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에 통계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 주기, 작성기준, 작성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소요예산 산출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통계표 설계	①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② 관련 자료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③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통계표를 반영하였는가?
	④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율통계표를 개발하였는가?
3. 행정자료 입수	①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는가?
	② 자료 제공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③ 원자료로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통계표 작성	①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에 대해 검토 및 정비하였는가?
	② 고유 식별자(연계키)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통계 작성용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는가?
	③ 통계표 작성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 결과분석	①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였는가?
	②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하였는가?
6.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①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②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③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지역통계 표준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	전화번호
지역통계기획팀	042) 481-6988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 강원지방통계지청	033) 258-3650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특별자치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23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노인등록통계

- 발　　행: 2023년 12월
- 발 행 인: 통계청장
- 편 집 인: 조사관리국장
- 총괄기획: 지역통계기획팀
- 공동기획: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발 행 처: 통계청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042-481-6988
-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발간번호: 11-1240000-001655-01

통계청